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294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서미화・이병진・강준현

윤종군 • 이성윤 • 이재강

민병덕 • 윤종오 • 박수현

박홍배 • 추미애 • 이기헌

김동아 · 정춘생 · 김종민

최보유 · 이광희 · 허종식

허성무 • 박희승 • 윤건영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권고를 받은 자가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차별행위의 개념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

권위원회의 결정도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 역시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	제4조(차별행위) ①
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 <신 설></u>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
	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u>하는 경우</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